

원화 펌뱅킹 서비스 계약서 신구조문대비표

변경전	변경후	비고
<p>제 6 조(신청서의 접수 등) ⑦항의 5. "갑" 또는 "을"이 처리한 "남부자"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민원은 모두 "을"의 책임으로 하며,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은 "을"의 책임으로 한다. 다만, "갑"은 "을"의 대고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.</p>	<p>제 6 조(신청서의 접수 등) ⑦항의 5. "갑" 또는 "을"이 처리한 "남부자"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민원은 "갑"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"을"의 책임으로 하며,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은 "을"의 책임으로 한다. 다만, "갑"은 "을"의 대고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</p>	<p>"모두, 모든" 삭제 "귀책사유가 없는" 추가</p>
<p>제 35 조 (면책) 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고장 및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, 불능 등에 대하여 "갑"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"갑"과 "을"은 그 책임을 면한다.</p>	<p>제 35 조 (면책) "갑"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, 정전, 통신기기, 회선, 컴퓨터의 고장 및 장애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, 불능 등에 대하여 "갑"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"갑"과 "을"은 그 책임을 면한다.</p>	<p>"귀책사유가 없는" 추가</p>
<p>제 42 조(관할법원)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"갑"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제 42 조(관할법원)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</p>	<p>변경</p>